

#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tatus of and Improvement Plan for Documentation of City·Provinc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백 주 현(Ju-Hyun Beak)\*\*

김 순 희(Soon-Hee kim)\*\*\*

### 목 차

1. 서 론	3.1 기록영화(Documentary Film)
1.1 연구방법	3.2 기록도서(Documentary Book)
1.2 선행연구	3.3 기록사진(Documentary Photography)
2.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개념 및 범위	4.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기록화 개선 방안
2.1 시·도지정문화재	4.1 기록화 방법 개선
2.2 시·도지정무형문화재	4.2 제도적 보완
3.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현황 및 문제점	5. 결 론

### <초 록>

문화재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조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족의 자산인 문화재는 일단 훼손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존과 전승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무형문화재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6개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보존과 전승을 위한 효율적인 기록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문화재, 문화재 기록, 기록영화, 기록도서, 기록사진

### <ABSTRACT>

Cultural property means the remains of cultural activities of a race as recognized with significant cultural value that would have significant historic and/or artistic value. This type of cultural property would not be restored once damaged that its preservation and succession would be immensely important. In particular,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s the 'cultural property without certain shape' that appropriate conservation and facilitation suitable to its characteristics have to be materializ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taken a look of the record status for 16 cities and provinces with the 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presented with the efficient record plan for desirable conservation and succession.

Keywords: cultural properties, record of cultural properties, record film, record books and documents and record photos

\* 본 연구는 백주현의 석사학위 논문(2010)인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 방안 연구: 대전광역시 예능종목을 중심으로』를 수정·요약한 것임.

\*\* 충남대학교 대학원 기록보존학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 졸업(whiteju920@hanmail.net)(제1저자)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iva@cnu.ac.kr)(교신저자)

■ 접수일자 2010년 5월 25일 ■ 수정일자 2010년 6월 22일 ■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26일

## 1. 서론

문화재는 우리 선조의 문화 활동의 산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하며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다. 특히 시·도지정무형문화재는 지역 주민의 동질성을 나타내주는 한편 그 지역마다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신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듯 오랜 세월 축적된 문화적 소산인 시·도지정무형문화재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시·도지정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도지정무형문화재를 잘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를 기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시·도지정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호·전승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록이 전제되어야 하며 보존과 활용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안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각각의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고유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생산부터 관리, 보존 및 활용을 고려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향토문화 보존적 가치를 갖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보존과 전승을 위한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기록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1.1 연구방법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에 대한 범주는 시·도에서 직접 계획하고 발주한 사업을 대상으로 기록 사업의 성격과 유사하거나 근접한 사업을 기준으로 하였고 ‘무형문화재 기록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계획된 사업을 모두 포함시켰다. 현재(2009.07월)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 현황을 파악해 놓은 총괄적인 자료는 거의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sup>1)</sup>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 현황파악을 위해 16개시·도(232개 시·군·구)<sup>2)</sup>를 대상으로 문헌조사,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 담당자 면담 조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호 및 보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기록물인 공문서, 사진, 이미지 기록, 동영상 등의 시청각 기록, 보고서를 검토하였고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의 유형에 대한 조사는 시·도 자체 기록사업 제작서, 지침서, 문화재연감 등의 간행물 등을 참고로 하여 실시하였다. 둘째 문헌을 통한 추적 조사와 함께 실무자 및 관계자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1차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과 2차 비구조화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고 담당자가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여 현황 파악에 정확성을 기하였다. 이 밖에 세부적인

- 1) ‘문화유산기록화사업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 2009. 문화재청 발표자료: 시·도지정문화재 기록 현황 파악을 한 자료가 있었으나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 담당자와 인터뷰 한 결과 데이터에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자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 2)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이상 16개 시·도와 각 시·도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232개 시·군·구이다.

자료요청과 면담은 필요시 마다 추가로 보완하였다. 셋째, 현장조사는 3단계에 걸쳐 진행하였다. 1단계는 기록화 현장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으로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보유자의 이력, 현장 동선 파악, 기록화 촬영 용역 업체와의 사전 촬영계획 문의로 이루어졌다. 2단계는 현지조사로 촬영현장을 방문하여 보유자 면담 및 제작현황을 관찰하고 특정 장면이 직접 투입되어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3단계 최종적으로 촬영현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록 현장의 흐름과 구성 및 기록 방법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 1.2 선행연구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 제도 및 정책이나 육성 또는 현황 방안 등의 관한 연구는 민속학, 역사학, 건축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시·도지정무형문화재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무형문화재 보존의 방법으로 무형문화재의 디지털화와 기록화를 주장하는 연구는 김현선(2005), 한양명(2006), 임재해(2007), 임장혁(2008)의 연구가 있다. 이 들 연구는 역사학, 민속학 분야에서 다른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존 방법에 대한 연구로 무형문화재 기록화의 필요성과 방향성 부분은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시·도지정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김선영, 유진(2006), 위주영(2006)의 연구가 있다. 시·도지정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는데 의의를 가지지만 시·도지정무형문화재 중에서도 무용 종목에 대한 제도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포

함하기에는 제한적이다(김선영, 유진2006). 위주영(2006)의 논문은 “무형문화재 기록화 활용 방안”이라는 비교적 근접한 주제로 연구했지만 시·도지정무형문화재가 아닌 전남지역의 중요무형문화재 공예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생산물 분석 연구에 대한 점을 제시 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밖에 강수나(2008)는 건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를 진행 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문화재의 범위를 건축문화재로 한정시켜 건축문화재 보존관리를 제시하였고 그 방법에 대한 지적은 많은 참고가 되었으나 건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이고 본 연구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기록의 아카이빙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재 또는 무형문화재를 보존·관리함에 있어 ‘기록’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남기고 활용해야 할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기록 관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과 기록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개념 및 범위

### 2.1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문화재에 대해 ‘인위

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문화재의 성격에 따른 유형화(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와 각 유형별 정의를 부여하고 있다.<sup>3)</sup> 여기에서 유형문화재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하며, 무형문화재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념물이란 '절터·옛무덤·조개무덤·성터·궁터·가마터·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동물(그 서식처·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지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민속자료란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을 말한다.<sup>4)</sup>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행정주체의 지정여부에 따라 문화재를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함과 동시에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지정주체에 따라 문화재청장(국가)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있다.<sup>5)</sup> 여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로서 국보·보물(유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기념물), 중요민속자료(민속자료)가 있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도지사)가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시·도지정유형문화재, 시·도지정무형문화재, 시·도지정기념물, 시·도지정민속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재자료'는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하고 있다(표 1 참조).

## 2.2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의 사전적 의미는 '형태로 보이지 않는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다. 즉 유형문화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말한다. 법률적 의미로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

3)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4)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 2009.1.30) 제2조.

5)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표 1〉 문화재의 성격 및 지정주체에 의한 분류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유형문화재	국보 보물	유형문화재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매장문화재 향토유적 등
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사적	기념물		
	사적 및 명승			
	명승			
민속자료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중요민속자료			

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1962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보호제도가 도입 된지 8년 7개월이 지난 1970년 8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성립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중심의 단일체제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2원체제로 전환하여 무형문화재의 보호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특유의 향토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김선영 2007).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대상은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와 같이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대상은 모두 같지만 그 속에 담긴 가치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시·도문화재보호조례<sup>6)</sup>를 살펴보면 역사성·예술성·학술성에 대한 가치와 더불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이란 요소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도지정무형문화재란 '시·도 관할 구역 내의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가지고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시·도지정무형문화재는 지역주민의 향토애와 정체성 및 그 지역의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관리의 소홀, 사유재산권 보호의 문제, 예산 등의 이유로 적절한 보존과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그 가치를 충분히 조명 받지 못한 채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대부분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문화의 발전 및 지역 정체성을 이루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는 적절한 보존과 활용방안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6)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3조 제1항, 부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문화재 보호조례 제2조 제1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조,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2조 제1항,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조 제1항,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2조 제1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조 제1항,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2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 3.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현황 및 문제점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기록화 사업은 오래 전 부터 추진되었는데 1965년 문화재관리국이 추진한 '중요무형문화재 영상기록사업'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6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꼭두각시놀음'과 제4호 '갯길'을 시작으로 1994년 제82-가호 '동해안별신굿'과 제82-다호 '위도띠뱃놀이', 제89호 '침선장'을 마지막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사업을 이관하였으며 이관할 때까지 모두 69편을 제작하였다. 문화재관리국이 담당하던 기록화 업무가 1995년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관되면서 1995년에는 '제와장' 한 종목에 대한 기록화 추진을 통해 이전에 비해 훨씬 확장된 새로운 방식을 시험·적용하였으며 매년 기록화 대상 종목을 증가시켜 1996년에는 4종목, 1997년에는 7종목, 1998년과 1999년에는 8종목, 2000년부터는 매년 10종목을 기록하고 있다(임형진 2004). 2009년 12월 현재 모두 118편에 대한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이 완료되었다.

이에 비해 시·도지정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록은 경기도(1997년)를 시작으로 최근에 이루어졌다. '기록화' 이전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영상작업은 있었지만 제작된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종목에 대한 소개 및 홍보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sup>7)</sup>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의 주체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 공익 재단 법인으로 나누어지는데<sup>8)</sup>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근거하여 기본 틀을 마련하고 제작을 수행한다. 비영리 공익 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기록화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지정무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울시 무형문화재 동영상 기록제작',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사업',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승기록화사업', 경기도 '경기문화재 발견시리즈', 강원도 '무형문화재 전수활동기록화 사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영상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기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각 시·도별 기록화 사업의 명칭과 메뉴의 통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록화 명칭과 메뉴의 통일화는 분산되어 있는 행정적 시스템의 표준화를 가져오고 통일감을 주며 추후에 각 지역의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계획할 때 시스템 상으로나 학술적 교류에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는 16개 시·도(232개 시·군·구) 중에서 8개 시·도에서

7) 실제로 전라북도의 경우 '무형문화재기록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데 이는 기록매체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 제작되었던 기록영상물과, 녹음테이프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사업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도 대단히 중요한 사례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8) 16개 시·도를 조사한 결과 8개 기관에서 기록화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7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록사업이 이루어졌으나 경기도의 경우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록물은 기록영화, 기록도서, 기록사진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었다. 기록영화와 기록도서, 기록사진 세 가지를 시행하는 시·도는 없었고 주로 기록영화를 통해서만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3.1 기록영화(Documentary Film)<sup>9)</sup>

기록의 방법과 매체는 다양하다. 동작과 소리를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기술 분야의 발달에 힘입어 영상기록이 문자기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도 영상기록물인 기록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 3.1.1 기록영화 제작현황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영화는 16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인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이며 반면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8개 시·도는 예산 부족, 인력부족, 인식의 부족 등으로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 예정 중으로 조사되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도지정무형문화재 현황이 41종목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보유 수량이 높은 곳이다. 2002년부터 기록 사업을 시행 해 31종목의 기록영화를 제작·서비스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16종목의

시·도지정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무형문화재기록화 사업을 시작해 현재 2종목의 기록영화를 제작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가 24종목으로 그 중 4종목의 기록영화를 완료한 상황이다. 인천광역시는 기록영화 뿐 만 아니라 기록도서도 함께 발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에 2종목, 2008년에 2종목, 2009년에도 2종목<sup>10)</sup>이 예정되어 있어 해마다 2종목씩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17종목 시·도지정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4종목의 기록화가 완료 되었으며 영상기록물 뿐만 아니라 기록도서를 함께 발간하고 있다.<sup>11)</sup> 경기도의 경우 시·도지정무형문화재가 46종목으로 16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시·도지정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올해까지 32종목의 기록화 사업을 완료했으며 기록영화만 기록물로 남기고 있다. 강원도는 19종목의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 종목인 7종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완료했다. 경상남도는 현재 30종목의 시·도지정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있으며 17종목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완료했다. 연도별 현황은 2005년도에 5종목, 2006년도에 4종목, 2007년도에 4종목, 2008년도에 4종목의 기록영화만 제작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종목의 시·도지정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10종목의 기록화를 완료했다. 2004년부터 기록영화만 제작하고 있으며 완료된 현황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9) 기록영화(Documentary Film) : 사실을 기록하는 논픽션 영화. 네이버 백과사전 홈>문화예술>영화>영화일반.  
 10) 법폐와 작법무(제10호), 강화용두레질노래(제12호).  
 11) 대전광역시는 향후 2015년까지 매년 2종목씩 기록화 사업을 시행 할 예정이다.

해 서비스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유형(有形)의 문화재 경우 발굴 및 복원이 가능하지만 무형(無形)의 문화재는 기록과 계속적인 전수교육 두 가지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시·도지정무형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기록화는 매우 중요하다.

### 3.1.2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시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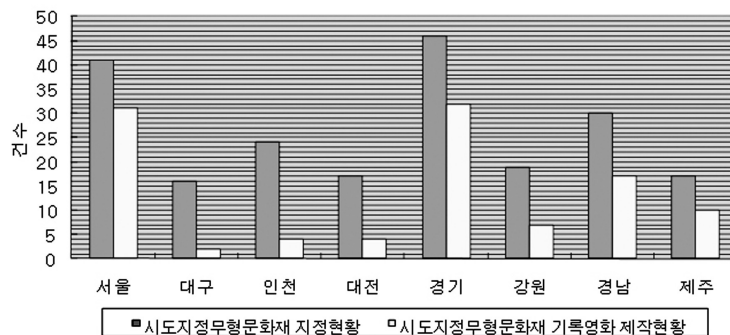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영화는 경기도(1997년)에서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제21호)’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2002년) ‘궁장(제23호)’, 대전광역시(2003년) ‘웃다리농악(제1호)’, 제주특별자치도(2004년) ‘해녀노래(제1호)’, ‘방앗돌 굴리는노래(제9호)’, ‘떨치후리는 노래(제10호)’, 세 종목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제작하였으며 강원도(2005년)는 ‘도공(제6호)’, ‘칠정제장(제11호)’, ‘칠장(제12호)’, ‘나전칠기장(제13호)’, ‘방짜수저장(제14호)’, ‘각자장(제16호)’, ‘생칠장(제17호)’에 대한 기록영화를 제작하였다. 경상남도(2005년)는 ‘거창삼베일소리(제17호)’, ‘진주오광대(제27호)’, ‘신광용류 가야금산조(제25호)’, ‘징장(제14호)’, ‘장

도장(제10호)’ 5종목에 대한 기록영화를 제작하였고, 인천광역시(2007년)는 ‘자수장(제13호)’, ‘인천근해갯가노래뱃노래(제3호)’ 두 종목에 대한 기록을 제작하였다. 대구광역시의 무형문화재 기록은 가장 최근인 2008년에 시작되었으며 가곡(제5호), 살풀이(제9호)가 제작되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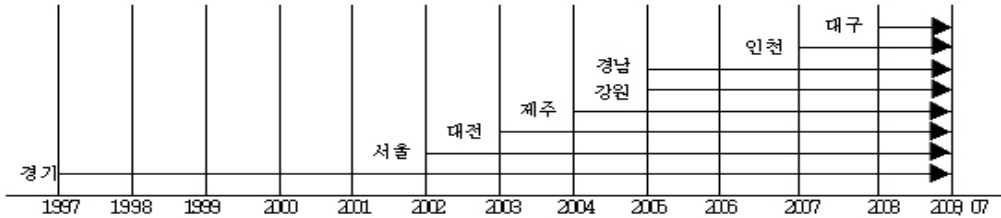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화가 1965년에 시작된데 반해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기록화가 최근에 이루어진 이유는 각 시·도지정무형문화재 제도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에 따라 각 시·도가 무형문화재 기록화에 관심을 갖고 제작할 수 있는 제도상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 밖에 기록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8개 시·도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 및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1.3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분야별 현황

시·도지정무형문화재는 분야에 따라 크게 기능종목과 예능종목으로 구분된다. 기능종목은 공예기술, 음식이 이에 속하며 예능종목은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가 해당된다. 8개



<그림 1> 시·도지정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및 기록영화 제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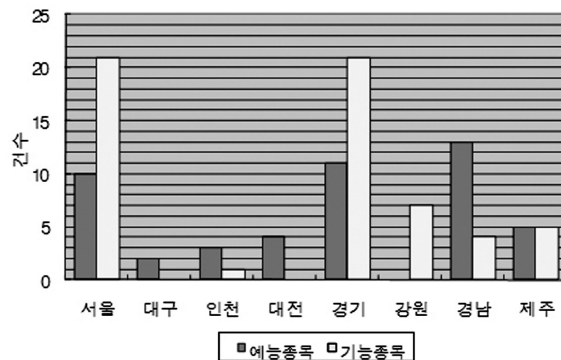
〈그림 2〉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시기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의 분야별 비율은 총 건수 107건 중에 기능종목이 59건이고 예능종목은 48건이다.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 제작 비율로 살펴보면 기능종목과 예능종목이 골고루 시행되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는 종목 선정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기록영화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능종목이 10건, 기능종목이 21건 제작되었고 대구광역시 기록영화 2종목이 모두 예능종목이다. 인천광역시 기록영화 3건, 기능종목이 1건 제작되었다. 대전광역시 기록영화 4건이 모두 예능종목이다. 경기도는 예능종목이 11건, 기능종목이 21건으로 모두 32종목의 기록영화가 제작되었다. 강원도는 기록영

화 7건이 모두 기능종목이다. 경상남도는 예능종목이 13건, 기능종목이 4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능종목 5건, 기능종목이 5건 제작되었다(그림 3 참조).

기록영화의 우선순위는 원형 보존의 시급성과 보유자의 노령화 등을 감안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능종목에 대한 기록영화를 완료한 다음에 예능종목의 기록영화를 제작한다든지 예능종목의 기록영화 제작 후에 기능종목의 기록영화를 제작하는 식의 방침은 기록영화 제작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기록영화의 원형보존 방안을 위한 종목 선정 방침이 지역별 또는 국가 차원의 매뉴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분야별 현황

### 3.2 기록도서(Documentary Book)<sup>12)</sup>

기록도서는 기록영화가 매체 특성상 담아내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기록영화와 병행하여 제작되고 있다. 따라서 학술적 자료와 실연과정의 상세 설명, 도면, 도안, 사진자료, 악보, 계보 등이 실리게 된다. 특히 기록도서는 기능 및 예능의 실연 과정과 특성을 객관적으로 수록하도록 되어 있어 학술성이 크게 강조된다.

앞서 살펴본 기록영화와 기록도서는 해당 종목의 실연과정을 영상과 문자라는 각각의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개 종목에 두 가지 결과물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16개 시·도 중 기록영화와 기록도서를 병행하여 시행 하는 기관은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 2개 기관에 불과하다(표 2 참조). 인천광역시는 현재 4종목의 기록을 완료했지만 기록도서의 경우 『인천근해도서지방의 상여소리(제16호)』, 『남창가곡(제7-가호)』, 『대전웃다

리농악(제1호)』, 『유천동산신제(제4호)』, 『가곡(제14호)』, 『들말두레소리(제13호)』, 4종목에 대한 기록을 완료했으며 각각에 대한 기록도서와 기록영화를 제작하였다. 기록도서는 기록영화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기록영화 제작과 기록도서 제작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행하여 시행하지 않고 추후에 보완하여 시행할 경우 시간적 공백이 생겨 기록영화와 기록도서의 연관성을 결여된다. 이 밖에 현재 기록도서의 경우 체제 구성의 미흡함과 작가와 지역마다 내용과 구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작 지침이 필요하다.

기록영화에서는 실연과정을 중심으로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기록도서에서는 종목의 역사, 종목의 발생, 전승현황, 향후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록 한 시점(가령, 2003년 제작당시)에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기록도서의 체제에는 기본적인

〈표 2〉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도서 제작 현황

(2009. 07 현재)

기관명	기록화 내용	
	기록영화	기록도서
서울특별시	○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경기도	○	×
강원도	○	×
경상남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12) 기록도서(Documentary Book): 사전적 용어는 아니며 기록하다(Documentary)는 의미와 도서(Book)의 결합어로 볼 수 있다.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자료적 가치로서 객관성 있는 내용과 구성으로 담겨있는 도서를 뜻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기록도서'라고 명칭 할 수 있다.

으로 기록영화와 마찬가지로 종목의 역사, 종목에 대한 설명 및 실연 과정, 종목을 전승하고 있는 역대 보유자들에 대한 설명, 전수교육의 현황에 대한 기록의 목적이 반드시 기술되어야 한다.

내용상 보완 요소로는 첫째, 해당종목의 사진·채보악보에 대한 수록이다. 사진의 중요성은 실제 현장을 촬영한 사진 이미지는 언어와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고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채보악보는 음악 종목에 대한 음악적 요소인 장단이나 가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악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이렇듯 사진·채보악보에 대한 설명은 본문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진설명도 필요한 요소로 사진설명(Caption, 寫眞說明)은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그에 넣은 사진에 나타난 현장 정황을 독자가 정확히 파악하도록 착안점을 안내하는 글로 그 종류로는 사진 밑에 넣는 것, 단(段)으로 짜서 사진대 옆에 붙이는 것, 1단으로 짜서 사진 아래나 옆에 꽤나 점선으로 붙이는 것, 기사의 끝에 = 표를 하고 기사에 새겨 넣는 것 등이 있다.<sup>13)</sup> 해당 사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기록도서의 참고 요소로서 가치가 있다. 따라서 기록도서에 편제되는 사진과 채보악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둘째, 기록도서에 인용된 사진의 일련번호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일련번호의 사전적 의미는 “일률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번호”이다. 사진에 대한 일련번호는 예능종목의

경우 실연의 순서에 따라 전달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진의 번호를 매겨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촬영제원은 기록도서가 기록영화를 보완하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 기록도서에서 기록 전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록의 촬영일, 촬영장소, 촬영 회수 등에 대한 촬영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기록영화와 기록도서가 한 세트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기록도서와 기록영화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는 독일의 학술영화연구소 제작지침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다. 독일의 학술영화연구소는 1953년 독일의 인문과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대학교육과 연구용 영상물 제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소 산하의 영상물 자료실인 EC(Encyclopaedia Cinema topographica)는 학술적 목적을 위한 영화를 기획하며 특정한 체계에 따라 기록하고 특정한 교육 시스템을 위해 사용한다. 연구소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영상물 제작을 위해 설립 초기부터 제작 지침을 마련했는데 통상 ‘12항의 제작지침’이라고 불리며 책자에는 기술적 제원과, 촬영제원, 지리적 정보, 이 밖에 등장인물, 촬영동기, 촬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변화들에 대한 정보도 책자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제작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조관연 2005).

이 밖에 공연 리스트 및 리플렛에 대한 내용이 보완 되어야 한다. 예능 종목의 경우 보유자가 그동안 연행했던 공연 리스트와 리플렛 자료 등이 보완되어야 하며 이는 기록도서에서만

13) 네이버 용어사전. 홈>매스컴용어>사>사진설명.

갖출 수 있는 내용으로 공연 리스트와 리플렛으로 하여금 전수현황 및 활발한 연행 활동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참고문헌의 기재사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시·도지정무형문화재에 대한 자료는 한정되어 있으며 희귀한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그 지역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더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기록도서는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와 관련한 참고문헌들은 추후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문헌에 대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여 보다 발전적인 연구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한다.

### 3.3 기록사진(Documentary Photography)<sup>14)</sup>

기록사진은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촬영한 사진을 말하며 연출 과정과 세부내용을 기록한다.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사진촬영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활용된다. 첫째, 해당 종목에 대해 기록영화에서 담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학술 자료로 활용하고 그 실연 과정은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무리 기록영화에서 완벽하게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촬영현장에서 완벽하게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촬영한 사진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사진촬영을 통하여 실연 현장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을 남겨 덩으로써 종목에 대한 실연이 끝난 후 참고자료로 활

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진을 통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재차 관찰하고 추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기록사진을 기록하는 곳은 강원도만 해당한다. 강원도는 편당 50매 내외의 사진과 설명 자료와 이를 담은 CD를 납품 내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스틸사진은 650만 화소 이상급 전문가용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의 규정 사항이나 고려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록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작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이 밖에 기록사진의 경우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록사진의 진본성과 객관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기록사진은 기록영화, 기록도서와 함께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에 참고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뚜렷한 지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산자나 관리자를 막론하고 기록사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기록사진의 특별한 법칙보다는 일반 원칙에 준하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사진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 생산물은 기록영화, 기록도서, 기록사진으로 나눌 수 있다. 시·도마다 제작지침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물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생산물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시·도지정무형문화재

14) 기록사진(Documentary Photography): 사회·자연 등 그 제재에 관계없이 후세에 자료적 가치로서 남게 될 객관성 있는 내용과 표현이 담겨 있는 사진.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뉴스 사진·포토르포르타주도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상업적 의도에 의한 흥미분위의 사진은 제외된다. 두산백과사전(<http://www.encyber.com>).

기록화 생산물은 기록영화, 기록도서, 기록사진 외에 실물자료나 종목별로 예능종목의 경우 생산되는 기록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화 방법에 대한 개선 방침도 필요할 것이다.

## 4.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기록화 개선 방안

### 4.1 기록화 방법 개선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해 정부는 기·예능 보유자의 공연을 지원하고 전수교육관을 건립, 지원금을 지급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기·예능을 전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인 음악, 무용,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 분야에 기록영화, 기록도서, 기록사진이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어 그 종목만의 특성과 꼭 담겨야 할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도에서 시행한 무형문화재 기록 방법은 기록영화, 기록도서, 기록사진의 형태로 굳어져 왔다.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기록물을 하나의 세트로 제작하는 곳은 없고 기록영화, 기록도서, 기록사진으로 기록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시·도지정무형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기록화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4.1.1 기록물 생산의 내실화

현재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는 기록영화, 기록도서, 기록사진 형태로 시행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물 외에도 음향, 문서, 실물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록화 방안이 필요하다.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물의 범위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동영상 기록물이다. 동영상 기록물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록영화 제작이 이에 해당되며 이 밖에 다른 매체를 통해 제작된 동영상 기록도 포함 할 수 있다. 동영상 기록물에는 예능종목의 경우 그 지역특색을 잘 반영하여 촬영하되 지정사유(역사), 전승현황, 전승과정, 전수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기능종목과 달리 예능종목은 보유자 1인이 아닌 보유단체인 종목이 다수 지정되어 있다. 이때는 '영상'이라는 매체의 특징을 살려 구성원 각각의 실연 장면이 담겨 있어야 한다. 둘째, 문서 기록물이다. 기록도서를 포함하여 조사보고서, 기록제작 시나리오, 기록 시행과 관련한 행정문서, 제작 일정표, 계획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영상제작에 필요한 촬영장소 사용과 출연진을 위한 협조 공문 같은 행정적인 문서도 기록물로 남겨져야 한다. 셋째, 정지영상 기록물이다. 정지영상 기록물은 기록사진을 포함하여 제보자 제공사진, 조사자 제작사진, 지도, 악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정지영상 기록물에는 기록물이 언제 입수 되었으며 그 생산물의 출처에 대한 기록이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기록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넷째, 음향 기록물이다. 예능종목에는 판소리, 가곡 등 음악 분야가 포함되며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실연녹음, 구술인터뷰, 제작 음반 등이 해당된다. 기술적인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능종목과는 달리 예능종목은 악기 연주, 소리, 취입새 등 음원의 특징을 많이 보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실물이다. 실물은 예능종목 재연 시 사용되는 물품이나 악기, 의복, 도구 등을 포함한다(그림 4 참조).

이처럼 시·도지정무형문화재는 범위가 무형적이기는 하지만 유형의 유산들 속에 담긴 가치는 무형(無形)의 지식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4.1.2 기록 방법의 전환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 시 촬영전문가에 의해 기록되어지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긴장을 하거나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촬영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중요하게 기록되어질 관점이 다르게 기록되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영상인류학에서도 제기하는 문제이다. 민속지 영화 제작에 있어서 촬영자만이 카메라를 조작하고 영상언어를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다른 영상물들에 비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부 민속지 제작자들은 ‘참여하는 카메라(participating camera)’나 ‘네이티브 피드백(native feedback)’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하였지만

이런 민족지영화에서도 영화 속의 인물들은 영화 제작에 동참하였을 따름이지 결코 이들이 영화 제작을 주도하지는 않았다(조관연 2005).

현재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영화의 경우 획일적이고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되어 있다. 지금의 기록영화 제작 방법이 원형보존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아니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960년부터 영상인류학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학자 및 미디어 실천가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참여적 비디오’에 내재되어 있는 기록학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기록화 방법의 전환이 요구된다. ‘참여 영상’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부자 관점’의 영상 제작이라는 점이다. 즉 참여 영상의 목적은 ‘커뮤니티 구성원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게 하라’는 것으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다. 현재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는 외부적 관점에서 영상을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의 정통성은 원리를 지키는데 있다. 그 원리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유자가 생각하는 원리와 물리(物理)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다를 수 있다.



<그림 4>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 생산물 예시

실제로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예능종목인 '대전웃다리농악'의 보유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부자적 관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보유자는 2003년 제작된 '대전웃다리농악'의 촬영 당시 설명과 함께 카메라가 4~5대가 기록화에 참여했지만 기록영화의 편집 과정에서 원하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대전웃다리농악'에서는 진법과 동선의 이동 및 변형 과정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지식이 없이 카메라의 위치와 현장의 전체 모습을 담으려는 촬영자의 해석대로 촬영된 결과였다. 만약 보유자가 직접 촬영을 했더라면 '웃다리농악'에 대한 설명을 직접할 수도 있었고 정확한 흐름의 전개도 가능했을 거라며 기록영화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참여하는 카메라'와 같은 방법을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의 초기 단계에 시도해 봄으로써 시·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직접 제작한 영상물로 하여금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는지 그에 대한 무형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형문화재는 그 특성상 주 인물인 보유자/보유단체가 자신의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촬영자의 외적인 관찰자 입장과는 충분히 다른 관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록화 방법의 전환을 제안해 본다.

#### 4.1.3 모션캡처(Motion Capture)에 의한 기록

시·도지정무형문화재를 기록화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지정 당시를 기록함으로써 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원형의 왜곡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함께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방법도 과거의 문자 기록에서 벗어나 영상, 사진, 음원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첨단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체의 발달과 함께 무형문화재의 기록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문자 기록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사진, 음원 및 영상 등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 컴퓨터의 처리능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3차원의 입체를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 기술이 더욱 정교화 되어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모양을 3차원으로 구현해내는 모션캡처(Motion Capture) 기술이 등장하였다. 모션캡처는 움직이는 물체에 공간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센서를 부착시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센서의 위치를 컴퓨터의 좌표공간에 치환하여 기록하는 시스템(박원모 2006)으로 모션캡처를 이용한 무형문화재의 기록은 형체가 없이 사람의 기·예능에 의해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신체적 표현을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나타내줌으로써 과학적 자료를 제공해준다. 특히 모션캡처는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신체적 표현이 중요한 무용종목에 대한 새로운 기록방법으로 관절의 움직임을 수치화된 계량적인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션캡처를 이용한 기록 방법은 과학적으로 정밀성과 정확성을 갖고 있

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상기록이나 문자기록과는 차별화된 방법이다. 현재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몇 종목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지정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하여 이루어진다면 첨단기술을 활용한 원형보존이 가능할 것이다.

## 4.2 제도적 보완

### 4.2.1 법적 측면

현재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경우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시·도지정무형문화재를 기록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시·도 문화재보호조례는 각 시·도의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향토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경우 제19조에 기록의 작성·보존 조항을 두어 ① 시장과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지정문화재 등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sup>15)</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제21조에 기록의 작성·보존 조항을 두어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지정문화재 및 문

화재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조항을 두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제26조에 기록의 작성·보존 조항을 두었으며, 인천광역시는 제24조에 기록·보존 조항을 두어 시장은 시지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을 작성하거나 조예가 깊은 자에게 기록하게 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제25조에 기록 작성·보존 조항을 두어 위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두었다. 대전광역시는 제25조에 기록의 작성·보존 조항을 두었고<sup>16)</sup> 울산광역시는 기록·보존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제10조에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라는 대장기록을 규정에 두었다. 경기도의 경우는 제25조에 관리기록의 작성·보존 조항을 두어 문화재의 기록 작성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강원도는 제19조에, 충청북도는 제26조에 기록의 작성·보존 조항을 포함시켰고 충청남도는 제26조에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 및 관리단체의 장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sup>17)</sup>라는 기록의 작성·보존 규정을 포함시켰다. 전라북도는 제23조에, 경상남도는 제24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8조에 대장 조항을 두어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

15)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 2009.03.18.

16)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 2003.10.31 조례 제3197호.

17) 충청남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 2005.12.30.

하고 있다. 16개 시·도를 조사한 결과 문화재 조례에 기록·보존의 규정을 넣지 않은 시·도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는 보조금 조항에서 기록·보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의무화 하고 있어 문화재에 대한 기록·보존에 자체 법률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 잘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인 법적 지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기록 보존을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그러다 보니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단지 선언적인 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관련법에 문화재기록물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문화재조례에 문화재기록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관리는 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조항에는 문화재기록물의 생산주체와 생산요소, 생산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처럼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문화재조례에 문화재기록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기록물관리법에서도 그에 알맞은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기록물관리법에 문화재와 같은 특수한 성격의 기록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독자적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기록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으

로 규정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시·도에 맞는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4.2.2 정책적 측면

##### (1) 국가차원의 지원정책

문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문화재 정책도 유형문화재 중심에서 무형문화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예산은 유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에 따르면 정부는 2002-2011년까지 문화재의 원형보존,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 등 3개의 핵심 대과제와 18개 정책과제로 구성하여 총 8개 정책과제 51개 분야 세부사업을 세웠다. 이 중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예산은 총 1,974억3천만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같은 문화재청의 중장기 계획의 예산은 실제 집행과는 다를 수 있으나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1,974억3천만원으로 유형문화재인 건조물 문화재 보존(4,470억원)이나 동산문화재 보존관리(1,480.5억원), 사적 보존정비(21,672억원) 등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의 기본방침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각 시·도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보존관리 기본원칙 및 정책과제별 세부추진 과제를 기초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시·도는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시행계획의 확정 전에 문화재청, 기초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문화재청, 기초자치단체 등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은 우선순위, 시급성 및 효과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사업별로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계획은 총괄적인 수요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재원규모 산정 및 연차적인 필요예산 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군·구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도의 세부시행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현장중심의 문화재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본방침이 수립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은 중앙기관인 문화재청의 기본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유형문화재 중심의 보존 정책은 각 시·도의 무형문화재 기록의 시급성에 저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형문화재 중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제도적 형평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각 시·도별 문화재보호조례에는 보조금 조항이 있어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제24조에 보조금 조항을 두어 문화재 등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8)</sup> 부산광역시의 경우 제26조에서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기타 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제30조에 보조금 문화재 기록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역시 제30조에 보조금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리·기록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해 제36조에 보조금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제29조에 보조금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제36조<sup>19)</sup>에 경상남도는 제33조에 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6개 시·도 자치단체 중 8개의 기관에서만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보조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조금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9년 03월에 개정된 내용이고 전라남도 또한 2008년에 보조금에 대한 규정을 재정립하여 최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각 시도별 문화재 기록에 대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 5. 결 론

문화재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조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

18)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2009.03.18).

19)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2008.03.13).

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족의 자산인 문화재는 일단 훼손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존과 전승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시·도지정문화재는 내 지역과 고장의 역사이며 전통이기 때문에 더욱 가꾸어야 할 문화적 자산이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그 동안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특히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심도 있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존 방법인 '기록'에 대한 제도나 정책적인 연구가 미비하고 그것도 지역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뤄져왔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기록화 방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는 기록영화, 기록도서, 기록사진의 형태로 제작되고 있었으며 기록영화는 8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었지만 기록도서는 2개 시·도에서 시행하였고 기록사진은 1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기록영화와 기록도서를 모두 시행한 시·도는 대전광역시(2003)와 인천광역시(2007) 뿐이었다. 이 밖에 기록화를 시행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도지정무형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기록 방안으로는 기록의 내실 강화, 기록 방법 개선으로 '참여하는 카메라'로의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 방법의 전환, 모션캡처를 이용한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를 제안하였다. 먼저 무형문화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기록영화, 기록도서, 기록사진뿐만 아니라 실물의 유형적 자산도 기록물로서 남겨져야 하며 실연 녹음이나 구술인터뷰 등의 음향 부분에 대한 기록의 내실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록 방법 개선으로는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진 기록 방식을 개선하여 보유자가 직접 '내부자 관점'에서 참여하여 촬영을 함으로써 보유자들의 인식세계를 보다 면밀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록 방법을 제안해 보았다. 모션캡처에 의한 기록은 신체적 표현을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나타내 줌으로써 과학적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점에서 적절하므로 모션캡처 제작 지침을 제안하였다. 제도보완으로는 법적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법적적 측면은 각 시·도별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여 기록화를 활성화해야함을 주장하였고 정책적 측면은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필요성을 근거로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록화 방안은 현재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방안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향후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발전 방향에서 활발하게 논의 되어져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연구와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재를 잘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참 고 문 헌

- 강수나, 김익한. 2009. “건축문화재 기록의 특성과 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19: 3-55.
- 김교빈. 2006.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 『인문학콘텐츠』, 6: 7-22.
- 김기덕. 2005. “문화원형의 층위와 새로운 원형 개념.” 『인문콘텐츠』, 6: 55-74.
- 김선영, 유진. 2006. “광역자치단체 무형문화재 제도의 연구: 무용종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4: 49-98.
- 김선영. 2007. 시·도 지정무형문화재 제도의 운영방안: 무용분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창규. 2006. “지방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한 법제개선 및 정책방향.” 『한양법학』, 19: 167-182.
- 김현선. 2005. “아시아무형문화재의 현황과 디지털화의 방향.” 『인문콘텐츠』, 5: 136-147.
- 박원모. 2003. “모션캡처를 이용한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방안에 대한 제연구.” 『문화재』, 36: 351-378.
- 위주영. 2006. 무형문화재 기록화와 활용방안 연구: 전남지역 중요무형문화재공예기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장혁. 2008. “아시아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비교민속학』, 37: 461-506.
- 임재해. 2007.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학』, 45: 237-285.
- 임형진. 2004.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 사업.”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전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52-162.
- 정수진. 2006. “원형의 기록화, 기록의 원형화.” 『한국민속학』, 44: 463-490.
- 조관연. 2005. “영상물을 통한 문화원형 기록과 복원에 대한 시론적 접근.” 『인문콘텐츠』, 1: 204-225.
- 한양명. 2006.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분야의 원형과 전승 문제에 대한 반성적 검토” 『한국민속학』, 44: 561-594.
- 김순제. 2008.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 16호 인천근해도서지방의 상여소리』. 민속원.
- 김혜정. 2008.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7-가호 남창가곡』. 민속원.
- 노옥순. 1994. 『참고봉사와 참고정보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문화재청. 2007. 『2007년도 기록물정리 실무편람』. 문화재청.
- 문화재청. 2008. 『기록물관리 업무의 이해』. 문화재청.
- 박동석. 2005. 『문화재보호법』. 민속원.
- 심우성. 2003. 『대전문화 뿌리찾기 무형문화재 기록도서 대전 옷다리 농악』. 대전광역시.
- 이원하 외. 2005. 『대전문화 뿌리찾기 무형문화재 기록도서3 대전들말두레소리』. 대전광역시.
- 장호수. 2000. 『문화재학개론』. 백산자료원.
- 정동찬. 1999. 『겨레과학인 우리공예』. 민속원.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한대수. 2005. 『대전문화 뿌리찾기 무형문화재 기록도서2 유천동 산신제』. 대전광역시.

**[관련법령]**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대구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2003.10.31개정].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 2009.01.30].  
부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2009.03.18개정].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2008.03.13개정].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  
충청남도문화재보호조례[2005.12.30개정].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참고사이트]**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ggcf.or.kr>〉.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nrich.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law>〉.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서울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 홈페이지.  
〈<http://www.seoulmaster.co.kr>〉.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홈페이지.  
〈<http://www.kpicaa.co.kr>〉.

